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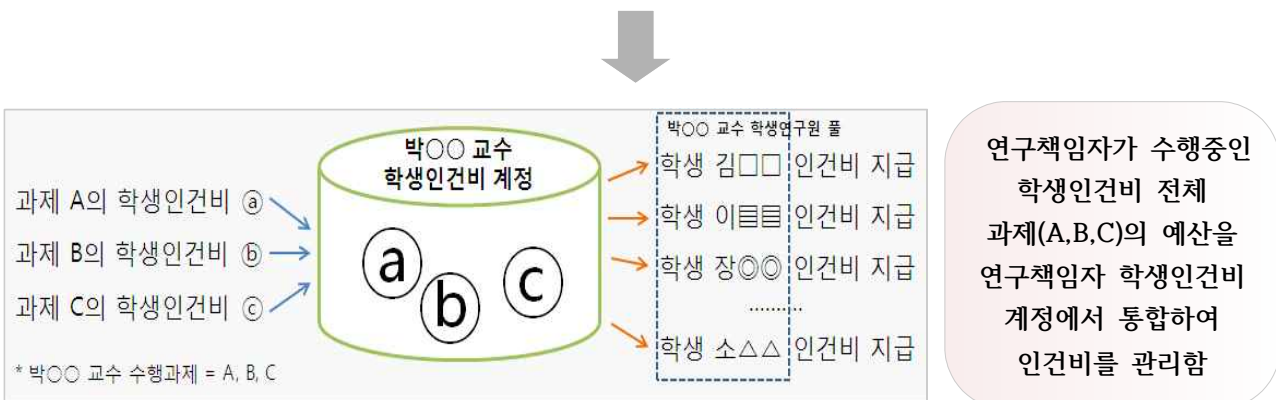
학생인건비 집행방법

문의 : 중앙지원팀 (880-4306, 4307)

1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개념(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)

-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하에 매년 80% 이상 집행하고 잔액(20%이하)의 반납 및 정산 면제
 - * 서울대학교 연구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
 - ** 개별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가 아닌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인건비를 의미(2015년 평균 약 90%)
-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

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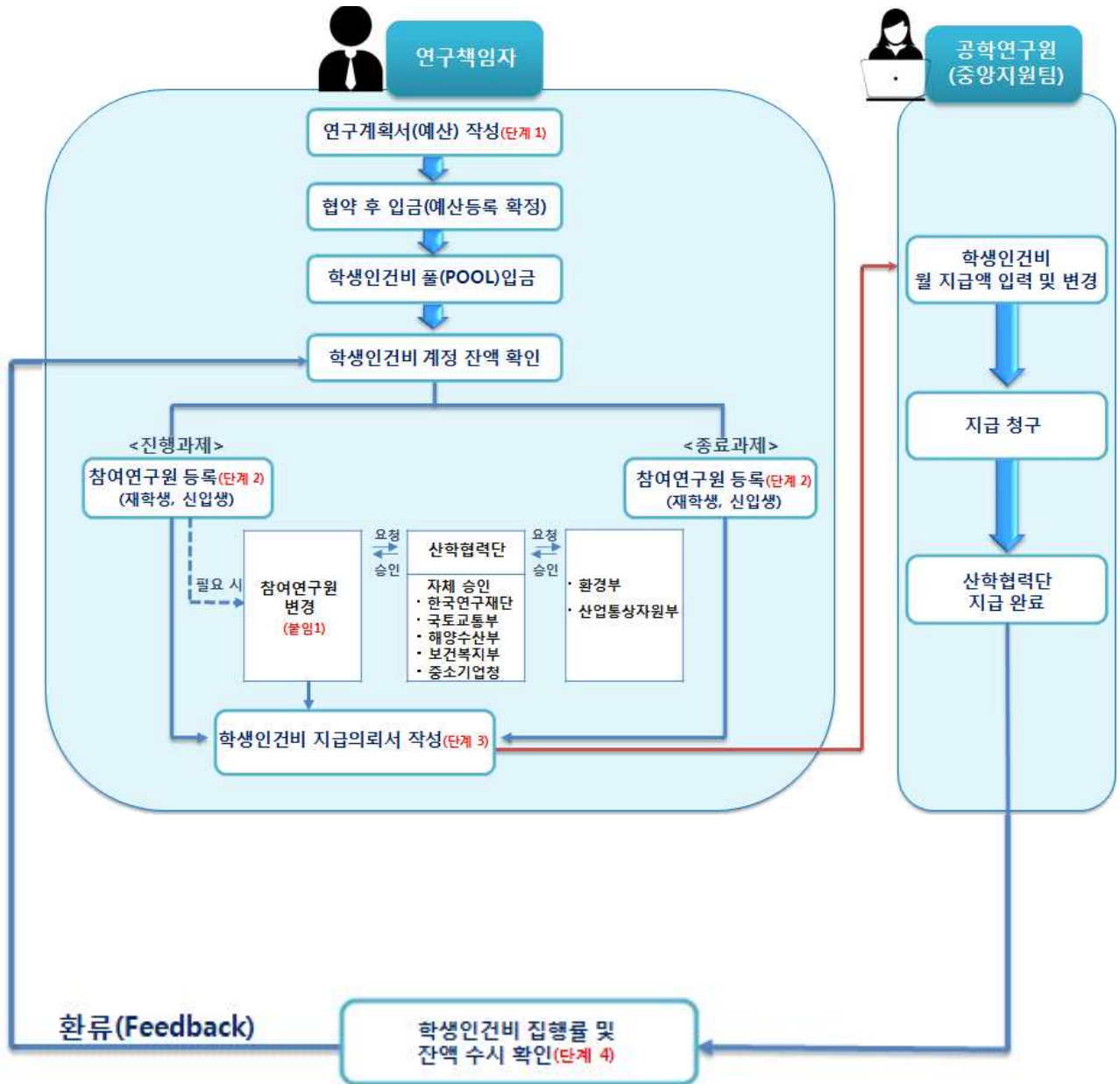


학생인건비의 참여율은 BK21 플러스 사업 과제 참여율을 포함한 100% 이내에 계상



정산 의무 없는 민간과제 연구비(인건비, 직접비)는 과제 종료일 또는 최종 잔금 입금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이월 사용 가능(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요청)

* 근거 :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지침(2015.03.04.)



단계 1

연구계획서 제출 단계 : 학생인건비 예산 작성

연구계획서(양식)

(단위 : 원)

구 분	인건비 계상기준(월 급여)	과제당 man-month 투입 총량	예산 총액
박사과정	2,500,000	2.4	6,000,000
석사과정	1,800,000	1.2	2,160,000
학사과정	1,000,000	1.2	1,200,000
박사후연구원	3,500,000	2.4	8,400,000
합 계			17,760,000

- ※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: 학사 100만원 / 석사 180만원 / 박사 250만원 / 박사후연구원 : 소속기관 인건비 기준
- ※ man-month 총액 :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,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 비용 총액
- ※ man-month 계산식 :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× 과제수행기간
박사과정 A 계산식 40% × 6개월 = 2.4m/m
- ※ 예산 총액 계산식 : 월 급여(인건비 계상기준) × man-month
박사과정 A 계산식 2,500,000원(박사과정 계상기준) × 2.4 = 6,000,000원

단계 2

과제 선정 후 입금 단계 : 참여연구원 등록(산단 연구비 시스템)

연구원 등록부(양식)

성 명	현재학위	월지급액	지급(참여)기간 (횟수)	과제당 참여율	은행	계좌번호
A	박사과정	0	15년 5월~15년 10월 (6회)	40%	농협	302-1062-***
B	석사과정	0	15년 5월~15년 10월 (6회)	20%	농협	302-1062-***
C	학사과정	0	15년 5월~15년 10월 (6회)	20%	농협	079-12-***
D	박사후연구원	0	15년 5월~15년 10월 (6회)	40%	농협	079-12-***
합 계						

단계 3

학생인건비 지급의뢰서 작성 단계

연구계획서상

실 지급액

(단위 : 원)

구 분	인건비 계상기준 (월 급여) (A)	과제당 man-month 투입 총량	총 액	과제당 참여율 (B)	학생인건비 월 지급액(C) (C=A×B)	참여율 대비 매월 지급액(지급률)			
						최 대 (100%)	권 장 (80%)	50%	0%
박사과정	2,500,000	2.4	6,000,000	40%	1,000,000	1,000,000	800,000	500,000	0
석사과정	1,800,000	1.2	2,160,000	20%	360,000	360,000	288,000	180,000	0
학사과정	1,000,000	1.2	1,200,000	20%	200,000	200,000	160,000	100,000	0
박사후 연구원	3,500,000	2.4	8,400,000	40%	1,400,000	1,400,000	1,120,000	700,000	0
합 계		7.2	17,760,000		2,960,000	2,960,000	2,368,000	1,480,000	0

* 매년 서울대 전체 학생인건비 80% 이상 사용이 의무이지만, 개별 연구책임자도 가능하면 80% 이상 사용 권장

학생인건비 지급의뢰서(양식)

(단위 : 원)

성 명	현재학위	월지급액	지급기간	은행	계좌번호
A	박사과정	800,000	15년 5월~15년 10월	농협	302-1062-***
B	석사과정	288,000	15년 5월~15년 10월	농협	302-1062-***
C	학사과정	160,000	15년 5월~15년 10월	농협	079-12-***
D	박사후연구원	1,120,000	15년 5월~15년 10월	농협	079-12-***
합 계		2,368,000			

단계 4

학생인건비 집행률 및 잔액 수시 확인 단계(복수과제)

(단위 : 원)

개별교수 학생인건비 계정	과제번호	연구과제명	연구기간	학생인건비 입금총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400-0158	0583- 20140024	위해도에 기반한 사격장 오염부지..	15.05.01. - 16.02.28	10,800,000	10,800,000	0	
	0668- 20150018	복합오염 준설토 생물학적 정화공정..	15.05.01. - 15.10.31	17,760,000	14,208,000	3,552,000	사용가능
	0668- 20160025	하천유사와 오염을 고려한 하도의 친환경..	16.04.01. - 17.03.31	30,000,000	0	30,000,000	사용가능
합 계						33,552,000	

* 과제 종료 후, 본 과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인건비 잔액 집행 가능
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과제별 참여율 관리 및 정산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지원기관에서 정산 시 해당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및 지급내역을 요구함

구 분	환경부	산업통상자원부	한국연구재단	국토교통부	해양수산부	보건복지부	중소기업청	
미래부 공통규정	·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 (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) 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을 아니한다.							
지원기관 요구사항	참여 연구원 (학생 연구원 포함) 변경	· 환경부 EcoPlus 시스템에 변경 사항 입력, 변경 승인 공문 및 변경내역 첨부	· 산자부 Kiat 시스템에 변경 사항 입력, 변경 승인 공문 및 변경내역 첨부	· 승인 절차 없음	· 승인 절차 없음	· 승인 절차 없음	· 승인 절차 없음	· 승인 절차 없음
	예산 승인 사항	· 과제별 학생인건비 예산을 원래 계획(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)보다 200만원을 초과하여 5%이상 증·감액 시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(200만원 초과 & ±5% 이상)						
참고사항	· 과제 지원기관 전담 위원(간사)에 따라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을 거절하는 일부 사례가 있음(산학협력단을 통해 시정 요청하였음)							